

# (주)영원무역 감사위원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1조 【목적】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적용범위】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【직무와 권한】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 제2장 구 성

제4조 【구성】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위원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

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【해임】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또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.

제6조 【위원장】 ①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가운데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제7조 【종류】 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 【소집권자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【소집절차】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 【결의방법】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【부의사항】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
### 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-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- (5)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(6) 내부회계관리규정 제/개정 승인 및 평가보고서의 작성 제출
- (7)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 포함)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

### 3. 감사에 관한 사항

- (1) 업무·재산 조사

- (2) 자회사의 조사
- (3) 이사의 보고 수령
-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
- (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
- (6) 외부감사인 선임 및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/개정
- (7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- (8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의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
- (9) 감사계획 및 결과
- (10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- (11)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
- (12)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- (13) 감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- (14)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
- (15) 회사가 감사인 지정 또는 지정감사인에 대한 재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(16) 내부고발제도에 접수된 회계부정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수령
- (17)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,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·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·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

#### 4.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

- (1) 외부 및 내부 이슈 파악과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

제12조 【관계인의 출석 등】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 【의사록】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4장 보 칙

제14조 【외부감사인과의 연계】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전담부서의 설치 등】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감사록의 작성】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7조 【간사】 ① 감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18조 【규정의 개폐】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19조 【외부감사인 선정 등】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,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,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개정일】 아래 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.